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단체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

---

## 1. 단체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

###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 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해당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단체실손을 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단체실손의료보험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중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실손의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전체에 대해 보장외의 중지(이하 '계약중지' 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 이라 합니다)의 피보험자인 경우
  2.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실손 이외의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

\* 개인실손의료보험 : 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 계약중지 신청일 : 피보험자가 계약중지 신청을 회사에 접수한 날을 말함

- ② 제1항의 「해당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전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개인실손의료보험 보장종목 전체를 말하며 보장종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계약중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③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중지 확인서」를 드립니다. 단, 계약자와 회사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계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릴 수 있고 이는 피보험자에게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중지는 피보험자의 계약중지 신청일부터 시작되고,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재개 신청 전까지 회사는 계약중지 피보험자의 단체실손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중지지급금의 산출과 지급)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지지급금」이라 함은 단체실손을 중지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지한 단체실손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해약환급금과 중지시점부터 차기 보험료 갱신시점까지의 미경과보험료 합산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중지 후 납입

된 분납 보험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②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중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중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중지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2회이후의 보험료를 차기 보험료 갱신시점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마지막 분납회차 보험료 납입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중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③ 해당 지급기일내에 「중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중지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지신청일 다음날부터 마지막 분납회차 보험료 납입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중지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중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중지지급금의 환수 및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 중지지급금을 받은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2. 회원탈퇴 등 1호에 준하는 사유

### 제4조(계약중지 신청의 철회)

- ① 피보험자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중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 전 단체실손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신청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중지 전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③ 계약중지 신청과 계약중지 신청 철회는 계약중지 전 단체실손 갱신기간마다 매 1회에 한합니다.

### 제5조(계약중지 신청의 철회의 제한)

제4조(계약중지 신청의 철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회사로부터 「중지지급금」을 받은 경우 회사에 「중지지급금」을 환입하기 전까지 계약중지 신청의 철회가 제한됩니다.

### 제6조(계약중지 후 재개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중지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피보험자는 제3조(중지지급금의 산출과 지급)에 따라 중지시점에 지급받았던 「중지지급금」 중 재개시점부터 차기 보험료 갱신시점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단체실손의 보통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